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 법」제66조의2 및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원회의장

1. 제정이유

우리 구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유산들이 존재하는 서울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,발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(안 제4조).
- 다.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 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전통문화"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·무용·미술·건축·음식·의상·서예·공예·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, 그 활동을 권장·보호 ·육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) 구청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
 - 3.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
 - 4.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
 - 5.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사업)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전통문화행사 개최(제례, 제향, 세시풍속 등)

- 2.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
- 3.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
- 4.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·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재정 지원)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있다.
 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 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표창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,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